



—質疑와 有権解釈—

여기에는 质疑応答 内容은 被保險者 医療保險組合, 医療機關 및 其他機關으로부터의 質疑에 대한 当局의 有権解釈입니다. 이 欄은 会員病院의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固定欄으로 連載하고 있어오니 많은 參考바랍니다.

【問】식도等 장기의 협착으로 인하여 음식물의 연하가 곤란하고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풍선확장 카테타(Balloon dialation Catheter)를 사용하여 협착부위를 확장 치료하는 診療行為의 酬價 算定方法 및 材料代 算定方法.

【答】풍선확장 「카테타」에 의한 식도위, 십이지장 협착증 시술의 수기료는 食道成形術(자-242) : 「Esophagoplasty」의 소정금액을 30%를 算定하고 放射線撮影 및 판독료는 食道造影撮影(放射線 特殊撮影 酉價條件表)에 準하여 算定함.

同施術에 使用된 材料는 「카테타 필립」조영제, 「동핏팅킷」, 「가이드 와이어」만 認定하고 材料代는 診療酬價 算定方法 6에 의거 算定함 ('84. 7. 1 진료분부터 적용함)

【問】分娩室에는 新生兒 監視裝置機(O. C. T.)를 설치하여 胎兒의 異常有無를 관찰할 경우에는 5,000원, 新生兒 出產時 誘導分娩, 出血 기타 產母 또는 胎兒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감시료로 10,000원 이상의 요금을 산정하고 있음에 의료보험환자의 경우 保険給與가 認定되지 않고 있어 이의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없는지.

【答】新生兒 管理料는 자-438 : 「新生兒管理 및 處置(1日當), Neonatal Care & Management

1. 新生兒 管理料 및 處置 비용으로써 기저귀(1회용 diaper 포함)와 같은 소모품 비용과新生兒 관찰 및 처치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관리한 일수에 의하되 3日 이내로 算定한다.

2. 未熟兒를 保育器에 保育할 경우나 新生兒가 疾病에 있어 입원실에 수용하여 입원료를 算定할 경우에는 算定하지 아니한다. 예의하여 算定하여야 하므로 新生兒 監視裝置機(O. C. T.)를 使用하여 出產前 胎兒의 異常有無를 관찰하더라도 별도 징수할 수 없으며 分娩料는 자-435 : 「分娩(Delivery), 감자(釘子 : Forcep D.) 또는 흡인만출술(吸引撲出術 : Vacuum D.)」의 所定酬價를 算定하여야 하므로 誘導分娩, 血出, 기타 產母 또는 胎兒가 위험하다고 판단됨으로 감시를 하였다는 이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진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임.

따라서 본인부담 과다징수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환불 조치하고, 이와같은 위법 부당한 사례를 즉시 시정조치 하지 않고 다른 보험환자에게도 계속 적용할 경우 현지 지도가 실시됨.

【問】C-A rm형 장치의 사용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정형외과 수술인 O/R, C/Reduction시는 수술료에 9,250원을 가산토록 되어있으나 C-Arm을 이용한 담도 수술시 9,250원을 加算할 수 있는지 여부.

나. C-Arm을 이용하여 O.P.C(수술중 담관조영)시 C-Arm의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答】**診療酬価 基準額表**－제 1 절(방사선 진단료) 다-5-다 註 :『1. 만 6 세 이하 소아(小兒)의 장중첩증에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대장조영촬영 기술료에 11,440원을 가산한다.

다만 방사선 투시하에 비관혈적 정복술을 실 bào하여 관혈적 적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동금액을 가산할 수 없다.

2. C-Arm형 장치를 포함한 영상증폭장치(Television Image Intensification system)를 이용하여 도수 또는 관혈적 정복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수술료에 9,250원을 加算한다.에 의하면 C-Arm형 장치를 포함한 영상 증폭장치를 이용하여 도수 또는 관혈적 정복술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수술료에 9,250원을 가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담도수술, 수술중 담관조영, 신경블록이나 골수내 주사 및 타수술시에 C-Arm을 사용하였더라도 동사용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는것임.

【問】 개심술이나 그의 수술시 동맥 정맥등에 지혈목적으로 사용되는 **Vascular Tourniquet Kit**(가격 : 3,000원 정도)의 인정여부

【答】 수술시 과다출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혈조치를 하는 바 동지혈 목적으로 지혈용구, 지혈제 또는 지혈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그에 따른 재료등의 비용은 소정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는것임. 따라서 동·정맥 등의 지혈목적에 사용되는 Vascular Tourniquet Kit도 별도 인정할 수 없음.

【問】 비관혈적 전색 제거술시 사용하는 **Embolectomy Catheter** 또는 **Forgarty Catheter**(가격 : 33,600원)의 인정여부.

【答】 비관혈적 전색 제거술료는 자-199 :「전색제거술(栓塞除去術) Embolectomy」의 所定酬価를 算定하는것임. 이 경우 사용되는 「카테타」(Embolectomy Catheter 또는 Forgarty Catheter)등의 재료대는 소정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算定할 수 없음.

【問】 **Suprapubic Cystostomy**시 사용되는 **Uristril**(가격 : 37,000원 정도)의 인정여부.

【答】 요도협착 또는 전립선비대등으로 비뇨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방광루공술」은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광루성형술 자-357 :「방광루성형술(膀胱瘻成形術) Cystostomy」의 소정금액에 의하여 算定하기 바람, 방광루공술시 사용하는 재료인 「카테타」는 Rubber, Vinyl, Silastic등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용된 「카테타」의 재료대는 종류에 불문하고 소정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는것임. 따라서 Uristril도 별도 인정할 수 없음.

【問】 「케스트」시 사용되는 석고붕대의 사용개수는 6인치 기준으로 되어있는 바, 4인치나 3인치 석고붕대를 사용하였을 경우 기준개수의 한계여부

【答】 **診療酬価 基準額表** 제 9 장 제 2 절 「케스트」로 산정지침에 석고붕대의 사용개수는 6인치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는 바 요양취급기관은 患者의 狀態나 골절부위에 따라 3인치, 4인치, 6인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케스트」로 부위별 1-6 항 :『하퇴(下腿)에서 족부(足部)에 미치는 것(Short leg Cast)』에 대하여 3인치, 4인치 석고붕대의 개수비율을 1:1.5의 기준으로 認定하되 기준 개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 6인치 석고붕대의 기준개수가 10개인 경우 3인치 또는 4인치를 사용하였을 경우 15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임.

【問】 **診療酬価 基準額表** 제 1 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入院料)에 의하면 응급실에서 12시간 이상 계속 진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으로 看做하되 入院管理料만 算定할 수 있도록 되어